

전기냉장고 온도표시 강제규정 시행(프랑스)



전기응용과 공업연구관 송양희
02) 579-7332 songyh@esak.or.kr

1. 개요

프랑스는 자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기냉장고에 대하여 소비자가 냉장실 유지온도를 보다 쉽게 식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온도 표시제도를 2002년 10월 1일부터(제품판매시점기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동제도 시행 배경 및 목적은 최근 살모넬라균 등에 의한 식중독 사고가 냉동냉장 식품류에서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식품을 보다 신선하게 저장 보관시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

2. 관련 근거법령 등

가정용 전기냉장고의 음식물 보관안전에 관한 강제법령 제2002-478(2002.4.3)호와 관련하여 자국내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전기냉장고 저장실 내부 온도표시를 위한 온도계 및 기타 장치에 관한 규제 규정을 시행하게 되었다.

프랑스 국무총리는 경제 재무 산업부장관의

발의에 따라 2000/0469(2000.8.2)호로 EU역내 사무국에 통보한 문건과 Information Society Service 에 관련된 기술규제규칙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 명령절차 98/34/CE(1998.6.22) 및 형법 제121조 2항, 제121조 40항, 제121조 41항, 소비자보호법 L221조 3항에 의거하여 소비지안전위원회 고시(2000.11.8)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에서 아래 표와 같이 규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세부 규제 내용

3.1 냉장고에 관한 규제 내용

아래 조항에 적합하지 않는 국내용 전기냉장고를 무료로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판매를 위한 소유 및 처분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 1 조

평균 온도가 +4℃ 또는 +4℃ 보다 낮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장실을 가지고 있을 것 이 저장실

은 문자, 그래픽, 색상 등의 형식으로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를 할 것

제 2 조

본 법령에 정의된 규정에 의거 +4℃ 이하의 저장실에 온도를 표시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제 3 조

저장실 내부의 유지온도를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을 것

제 4 조

아래의 내용이 명시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첨부할 것.

제 1 항

제1조에 정의된 표시를 제품사용설명서 상에서 설명하고 있을 것

제 2 항

제품 유지를 위한 보건위생규칙, 특히 소독(살균) 및 청소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것

제 3 항

음식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저장실을 별도로 세부 구분하여 표시하고, 저장된 식품 보관에 대한 권고사항을 설명하고 있을 것

제 4 항

서로 다른 종류의 음식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

리구조로 만들어,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을 것

제 5 항

온도조절방식이 기계식일 경우, 온도조절에 따른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것

제 6 항

식품저장실에 관한 강제규제사항은 간냉식(강제 송풍식) 냉장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2 온도계에 관한 규제 내용

식품저장실의 온도가 +4℃를 초과하고 있는지 +4℃ 이하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별도의 장치나, 온도계가 아래 조항에 적합하지 않는 국내용 전기냉장고를 무료로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판매를 위한 소유 및 처분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제 1 조

식품저장실 표시장치나, 온도계는 수은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제 2 조

식품저장실 내부 온도 측정기는 -2℃ ~ +15℃ 범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제 3 조

식품저장실 온도측정기의 측정눈금은 ±0.5℃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 4 조
 식품저장실 내부온도 2℃를 나타내기 위한 온도 측정 범위는 ± 1℃ 정도의 오차는 허용한다.

제 5 조
 식품저장실 온도는 30초 이내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제 6 조
 식품저장실 온도측정방법 및 사용조건을 표시하는 정보내용에 특히, 온도를 측정하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 7 조
 식품저장실 온도 표시장치로 나타내어진 온도가 + 4℃ 초과인지 +4℃ 이하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장치는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에 정의된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을 것

3.3 처벌에 관한 내용

본 법령의 3.1(냉장고에 관한 규제내용)을 만족하지 않는 국내용 냉장고나, 3.2(온도계에 관한 규제내용)을 만족하지 않는 온도계를 무료로 시장에 유통시키거나, 판매를 위한 소유 및 처분 등의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 Class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 3.1항 및 3.2항에 정의된 규제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형법 제121조 2항, 제131조 40항, 제131조 41항에 의거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재범의 경우, 5 Class 재범에 관한 처벌을 받게 된다.

3.4 예외조항에 관한 내용

본 법령은 EU역내 국가에서 제정된 협정에 따라서 상업화한 전기냉장고 및 제품내부의 식품저장실 온도를 표시하는 장치(온도계)에 대해서는 처분 또는 판매를 하여도 무방하다.

3.5 적용시기

본 법령은 공포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이후의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품 판매시점기준 :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3.6 관련부처

본 법 시행에 관련된 경제 재무 산업부장관, 법무부장관, 중소기업 대표 등은 프랑스 공화국 정부의 관보에 게재된 본 법령 집행을 책임진다.

4. 국내 냉장고 수출업체(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의 대응전략

규제항목	대응전략	비고
냉장식품 보관구역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장실 내부 온도를 0~4℃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냉장실 내부에 식품별 보관실 또는 구역을 구분 설치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문자, 그래픽, 색상 등으로 스티커를 만들어 명확하게 표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법령규정에서는 직냉식 냉장고만이 해당되고 간냉식 냉장고는 적용되지 않음 향후, 간냉식냉장고에 대해서는 톰슨 등 프랑스 업체의 동향에 따라 대응이 필요시됨.
냉장실내 온도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0~4℃를 표시할 수 있는 반도체식 또는 열전대식 정밀급 온도계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제품 사용 설명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사용 설명서 상에 식품보관구역, 위생, 청소, 소독, 살균 등의 내용을 삽입한다. 제품 사용 설명서 상에 식품종류별 보관구역을 설정하고, 음식 상호간의 혼합에 따른 훼손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삽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냉식 냉장고 및 간냉식 냉장고 모두에 대하여 적용됨.

